

고용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자문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갈려

고용노동부는 4.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②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였다.

노동부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 시설·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관리·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있어 개선 여부, 범위 및 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는 점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 전화상담망, 어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국세청의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관하여는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
- 다만,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함

한편, 노동부는 공공기관(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담 당	사무관	박미희 (044-202-7607)